



2019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실시

※ 취학수요조사란?

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의무 실시함(각 시·군 지역교육청에서 해당 시·군을 대상으로 실시함)

목적

- 지역 내 아동(만 0세~4세)의 보육 수요 판단 근거 자료 활용
 - * 어린이집, 유치원(공·사립), 가정 보육 등으로 구분 조사하여 실제적인 보육 수요를 파악함
- 전주 지역 유아 교육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 활용
-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학생 배치 계획 검토 자료 활용

관련 근거

-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7조
 - * 교육감은 매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 유아배치 계획 수립
-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7조의 2(유치원 취학 수요조사)
 - *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설문 조사 기간

2019년 7월 18일(목) ~ 31일(수)

설문 조사 대상

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0세~4세 영유아 보호자

설문 조사 방법

- 웹페이지** 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접속 ⇒ 설문페이지 이동 ⇒ 설문조사 시작
우편 어린이집으로 안내된 우편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로 참여 및 원아별 우편회수
면접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근처에서 조사원의 설문 협조요청을 받으실 경우, 조금만 시간을 내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.

조사 대행

효성ITX(주)(02-2102-8590)

【영·유아 보호자 정보수집 사항에 대한 안내】

- ◆ 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3호
 - *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◆ 수집목적 :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실시
- ◆ 수집방법 : 전라북도교육청·전주교육지원청 및 전주시청으로부터 공문에 의거 제공 받음
- ◆ 보유 및 이용기간 :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 종료(2019.12.31.) 시까지



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
행정지원과(☎ 270-6049)